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등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92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등	3
2. 하위사용자의 용도 외 화학물질 사용 금지 의무 신설	10
※ 참고자료	14
1.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체계	14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2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등록된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

록 하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9조 등).

Ⅲ. 검토의견

1.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시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②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영업비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위해성평가를</u>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위해성평가) ① ----- ----- ----- ----- ----- ----- <u>전문가가</u> <u>참여하는 위해성평가</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 -----

현행	개정안
화학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u>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u>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 ----- ----- ----- ----- -----<u>안전사용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 등 환경부령</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24조¹⁾에서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 **법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등록한 화학물질 중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제1호) 또는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제2호)에 대해서는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위해성평가 실적 및 추진 계획]

(단위: 건)

구분	실적							계획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77	1	13	6	21	21	15	14
상세위해성평가	35	1	13	6	5	6	4	4
초기위해성평가	42	—	—	—	16	15	11	10

자료: 환경부

위해성평가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형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가능성 등을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²⁾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체계

2)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제9조(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별표 7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규칙 제51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뿐만 아니라 위해성평가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위해성평가에 대한 신뢰도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³⁾, 「해상교통안전법」⁴⁾ 등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둘째, 현행법⁵⁾에서는 ①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나 ② 등록유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 제35조6)에서는 상품명,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적·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시행규칙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학적 특성에 관련된 정보 등 양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7)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거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화학물질안전정보(시행규칙 제35조)]

근거 규정	제공 정보
제1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제2호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제3호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4호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제5호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제6호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제7호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제8호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제9호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 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제10호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예시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여부를 양수하는 자가 양도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2. 하위사용자의 용도 외 화학물질 사용 금지 의무 신설

개정안은 하위사용자에게 기존에 등록·신고(변경을 포함한다)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3조의2(하위사용자의 의무) 하위사용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항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과태료) ①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3. ~ 7. (생략) ② (생략)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항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2조⁸⁾에 따르면 직접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등록·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⁹⁾에서는 직접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

8) 법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매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 과정에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자를 ‘하위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사용자가 기존에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등록·신고의 의무가 있는 제조·수입자뿐만 아니라 하위사용자 또한 본래의 용도 이외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학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 및 산업계¹⁰⁾에서는 현행법의 관리대상인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뿐만 아니라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용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예산 등 상당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외한다.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한석유회 등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체계(자료: 환경부)

